

# 연구수당 지급내규

개정 2020. 2. 24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교외연구과제 수행의 활성화 도모 및 효율화를 기하고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·장려금인 연구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연구수당은 해당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인력의 보상·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본 내규를 따른다. 단,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.

제4조(지급대상) 해당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시기 및 횟수) 해당 연구과제의 종료시점에 연구사업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참여연구원의 사기진작 등의 필요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.

제6조(계상기준) 연구수당은 인건비(현물, 미지급인건비 포함)의 20% 이내로 계상한다. 단, 지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간 수탁사업은 예외로 한다.

제7조(지급기준 및 절차) 연구책임자는 평가항목(연구기획, 연구수행, 연구실적, 연구참여도)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기여도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제8조(지급의 제한)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포함) 1인 과제 또는 민간수탁사업은 예외로 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11. 10. 25)

본 제정 내규는 2020.10.25.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2. 24)

본 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